

제3채무자진술서

사 건 번 호 : 2020타채114589

제3채무자는 위 사건의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다음사실을 진술합니다.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 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.

다 음

※ 제3채무자 통보비용 청구(예 아니오)

통보비용 및 포괄계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(제3 채무자)이 민사집행법 제237조(제291조)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하고, 위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 른 금융거래정보를 통보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.

1.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

가. 압류된 채권(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)을 인정하고 있습니까?

예 아니오

나. ['예'라고 대답한 경우]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?

다. 기타 참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3채무자(이하, 당사)는 본 사건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자 하는 귀 법원 2019카단823271 채권 가압류 사건의 제3채무자 진술 시 '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'만 기재하여 당사가 채무 자 주식회사 레이스투어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채권(공동프로모션비용 등)이 이미 존재함에도 이 를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.

한편, 당사는 2019년 3월 ~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채무자에게 지급 을 요청한 총액 309,248,000원 중 261,210,000원의 잔존채권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가압류 효력이 발생할 당시 채무자에 대한 당사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, 당사는 위 채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시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당사에 대한 채권 상당 액과 상계하여도 잔여채권 75,554,822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.

이에, 본 진술서로써 압류채권자들에게 위 내용과 같이 채권불인정과 더불어 당사의 상계의사

를 표시합니다.

2.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

가.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?

(여기서 말하는 지급의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가 없을 경우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를 의미함)

예 아니오

나. ['예'라고 대답한 경우]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?

다. 기타 참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

가.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

예 아니오

나. ['예'라고 대답한 경우]

①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다면, 그 권리자의 성명,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(예를 들어, 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질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)

②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,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,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③ 기타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,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,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4.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(가)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

가. 제3채무자는 이 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(가)압류당한 사실이 있습니까?

예 아니오

나. ['예'라고 대답한 경우] (가)압류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?

(예를 들어,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, 통합도산법상의 보전처분, 국세징수법에 의한

채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이를 기재하고, 그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, 주소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,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기재함)

첨 부 서 류

1. 레이스투어 프로모션비용청구 세금계산서(19년도 6건)
2. 레이스투어 프로모션비용 미지급현황(ERP캡처본)

2020.07.13

기타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

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

열람용